

# 경운대학교 총학생회회칙

## 학생회 회칙 전문

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낸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학생 자치기구로서, 학생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조직하였다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명칭은 “경운대학교 총학생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유능한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, 학생활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며, 대학 내의 자유 속에서 학술연구의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설치)** 본회는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회원)** 본회의 회원은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**제5조(권리)**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**제6조(의무)** 본회의 회원은 학칙과 회칙을 준수하고, 학생수혜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**제7조(금지활동)**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자치기구의 성격을 벗어난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.

**제8조(효력정지)** 본 회칙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.

**제9조(기능)**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술 연구 활동
2. 예술, 체육, 취미활동
3. 각종 봉사활동
4.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활동

**제10조(구성)** 본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집행위원회, 대의원회의 기구를 둔다.

## 제1절 집행위원회

제11조(지위)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12조(구성)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1인, 부총학생회장 1인, 국장·부장 각 1인 및 차장 각 2인으로 구성하되,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한 당선인이 되고 각 집행부의 국장·부장·차장은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제13조(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4조(부서) 집행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사무국 : 본회의 서무, 문서,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.
2. 기획국 : 본회의 각종 행사운영의 기획·조정 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3. 학술국 : 본회의 학예술활동 및 교양, 취미, 오락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4. 체육국 : 본회의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5. 복지국 : 본회 회원의 인권 및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업무와 대내·외 각종 봉사활동, 수련활동 및 동아리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6. 홍보국 : 본회의 활동에 관한 각종 홍보사업과 섭외활동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5조(직무)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② 부총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총학생회장 유고 시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부서장 중 1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.

제16조(회의) 집행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회를 가지며, 학교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나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7조(기능)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. 업무는 각 호와 같다.

1.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추진
3.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
4.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
5.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,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.
6. 기타 중요한 사항

## 제2절 대의원회

제18조(지위) 대의원회는 총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이다.

제19조(구성) ① 대의원회는 각 학과 학회장으로 구성하며, 신학기초에 구성한다.

② 대의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임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 단, 피선거권 등 선거제한 사항은 총학생회 정·부회장 선거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20조(기능)**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. 업무는 각 호와 같다.

1.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
2.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심의, 감사 및 승인
3. 정·부학생회장 불신임 발의 및 의결
4. 대의원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
5.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승인
6.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21조(회의)**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을 명시하여 4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

**제22조(정·부회장 불신임 결의)** ① 대의원회는 정·부회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

② 불신임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,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. 단,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정·부회장 선거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3장 학생단체(동아리 연합회)

**제23조(지위)**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이다.

**제24조(구성)** ①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의 회장으로 구성된다.

② 동아리 연합회의 임원은 동아리 연합회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다.

③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총동아리를 대표한다.

④ 동아리 연합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, 48학점 이상 수강 중인 자로 한다.

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.

**제25조(직능)** 동아리 연합회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친목·취미 단체의 구성·운영
2. 동아리별 행사 실시

## 3. 학내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

**제26조(지위)** 동아리 연합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동아리별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.

**제27조(회의)** 동아리 연합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8조(회원)** 동아리별 회원은 자의에 의하여 가입하며, 2개 이상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.

**제29조(지도교수)** 각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승인한 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지도와 협조를 받는다.

**제30조(인준)** 각 동아리는 15명 이상 120명 이하(4개 이상의 학과(전공)에 분포하여야 함)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소정의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**제31조(해산)** 각 동아리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거나, 연간 사업계획실적을 평가하여 부실한 단체로 인정될 시는 해산시킬 수 있다.

**제32조(등록)** 동아리 연합회 및 각 동아리의 신규 및 재등록은 매년 3월말까지로 한다.

**제33조(재정)**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동아리 연합회 및 각 동아리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제4장 <삭제>

제34조(목적) 삭제

제35조(구성) 삭제

제36조(기능) 삭제

## 제5장 재 정

**제37조(회비)** 신입생, 편입생을 포함하여 경운대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은 학생수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재정관리)**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로 충당하며,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며, 회비 출납 및 보관은 경운대학교 경리과에 위임하고,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이 인재개발처장의 결재를 받은 뒤 시행한다.

<개정 2021.10.01., 2022.04.01.>

**제39조(예산편성)** ①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운영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

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예산승인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,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대의원회는 예산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예산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
**제40조(결산)**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1조(감사)** 본회는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회계연도)**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43조(회칙개정)** ① 이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,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단, 회칙 개정은 11월초에 한다.

② 회부된 개정안은 학생회 임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**제44조(회칙보완)**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4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